

KLPGA 공인 이벤트 대회/행사 규정

I. 개최 조건

1. 공인(公認) 기준
 - 가. 공인의 정의
 - 나. 공인의 종류
 - 다. 공인 대상
2. 공통 사항
 - 가. 개최일자 선정
 - 나. KLPGA 회원(선수) 섭외 기준
 - 다. 역할 및 의무
 - 라. 징계 규정

II. 개최 절차 및 비용

1. 공인 이벤트 대회
2. 공인 이벤트 행사(이벤트성 프로암)

III. 기타

1. ‘각종대회 및 행사 공인 기준’ 규정
2. 안내 사항
 - 가. 문의/담당 안내
 - 나. 입금계좌 안내



I. 개최 조건

1. 공인(公認) 기준

가. 공인의 정의

- 1) 대회/행사의 진행이 KLPGA와의 협의 또는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 2) KLPGA의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3) 해당 대회/행사에 있어 KLPGA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수준 이어야 함

나. 공인의 종류

구분	KLPGA 주최or주관	KLPGA 공식기록 인정	상금 유무	해당 대회	비고
이벤트 대회	O / X	X	O	LF포인트 왕중왕전, 챔피언스 트로피 등 유사대회	
이벤트 행사	O / X	X	X	각종 기업 이벤트 프로암 등 유사행사 (홍보용 캘린더 제작 포함)	KLPGA 회원이 9명 이상 참가할 경우 공인 必 ※ 2023.01.01 부로 9명→5명으로 변경

다. 공인 대상

구분	공인 이벤트 대회	공인 이벤트 행사
적용 대상	1) KLPGA 회원이 참가하고, 상금이 지급되는 대회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이벤트 대회 가) KLPGA <u>정규투어 시드권자/시드순위</u> <u>60위 이내</u> 중 1명 이상 참가하는 경우 나) KLPGA 회원 중 <u>월드랭킹 100위</u> <u>이내자</u> 가 1명 이상 참가할 경우 (대회 4주전 화요일 기준) 다) <u>참가선수 전원이 KLPGA 회원일</u> 경우 2) 기타 KLPGA가 공인 이벤트 대회 자격을 부여하여, 승인이 필요한 경우	KLPGA 회원 <u>9명부터</u> 참가하는 이벤트성 프로암 등 유사 행사 ※ 2023.01.01 부로 9명→5명으로 변경
필수 사항	- 적용 대상인 경우, 대회/행사 개최 전 필히 KLPGA 신청 절차에 따라 공인 받아야 함 1) 주최사(대행사) : 본 규정에 맞춰 ‘KLPGA 공인 이벤트 대회/행사’ 신청 진행 2) KLPGA 회원 : ‘KLPGA 공인 이벤트 대회/행사’ 여부 확인 후 참가	

2. 공통 사항

가. 개최일자 선정

- 1) KLPGA 정규투어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정규투어 공식연습일, 프로암 및 본 대회 기간 동안은 개최 불가
- 2) 정규투어에 출전하는 선수들 대상이 아닌 기타 KLPGA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행사의 경우, 정규투어 기간 동안 개최 가능
- 3) 1일 복수 대회 개최 가능. 단, 출전선수가 중복 섭외 되지 않아야 함

나. KLPGA 회원(선수) 섭외 기준

구분	섭외 기준	참가 가능 회원	비고
1순위	주최사가 섭외하거나, KLPGA에게 섭외요청하여 섭외완료된 KLPGA 회원(인원 제한 없음)	정,준,티칭회원 특별회원(I-Tour 회원)	
2순위	온라인 참가신청을 통해 신청한 회원 중 아래 기준으로 배정 1) 정규투어 출전자격리스트 순 2) 드림투어 출전자격리스트 순 3) 공석 발생 시 선착순 배정	정회원	주최사 임의로 제외 불가

다. 역할 및 의무

구분	역할 및 의무
주최사 (대행사)	1) ‘KLPGA 공인 이벤트 대회/행사 규정’ 에 근거하여 행사를 진행하여야 함 2) 프로암 시 본 행사에 참가하는 초청 고객이 동반하는 선수에게 매너 및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하여야 함 - 선수 호칭 시 “000 프로” 라고 하여야 함 - 카트 앞좌석에 선수가 탑승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은 삼가도록 안내 하여야 함 3) 프로암 시 참가하는 초청 고객과 KLPGA 회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사를 운영하여야 함(만찬 시 음주 자제)
KLPGA 회원	1) 본 대회/행사가 KLPGA에 공인된 이벤트 대회/행사인지 확인한 후 참가해야 함 2) 사전에 공지한 본 행사 도착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함 3) KLPGA를 대표하는 회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행사에 임해야 함 4) KLPGA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5) 본 행사에 동반하는 초청 고객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언행에 주의해야 함 6) 만찬(시상식)에는 시간을 엄수함과 동시에 행사에 적합한 복장으로 환복 해야 함
KLPGA	1) 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최사(대행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함 2) 본 행사의 참가선수 섭외가 필요한 경우, KLPGA 회원 섭외 기준에 따라 섭외를 완료해야 함 3) 선수 사례비를 주최사(대행사)를 통하여 입금 받은 후 행사 종료 2주 이내에 원천 징수 후 선수 개인 계좌에 입금해야 함 4) 주최사(대행사) 혹은 선수에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징계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재함

라. 징계 규정

1) 주최사 및 대행사

구분		징계 사항
KLPGA 공인 대상인 이벤트 대회/행사	공인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	- 추후 본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u>재발 방지 공문 제출 및 규정 숙지</u> - 단, 직전 대회/행사 <u>공인료는 KLPGA에 납부</u> 해야 하며, 납부 시까지 KLPGA 공인 이벤트 대회/행사 개최 불가
	공인 받은 후 ‘KLPGA 공인 이벤트 대회/행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KLPGA의 <u>시정 요청 시</u>, 아래 기준에 따라 <u>조치 및 시행</u>하여야 함 1) 대회/행사 개최 전 : 개최 전 2) 대회/행사 당일 : 즉시 3) 대회/행사 종료 후 : 요청 후 15일 이내 - <u>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u>, 해당 대회/행사 개최 일자부터 <u>2년간</u> KLPGA 공인 이벤트대회/행사 <u>개최 불가</u>
KLPGA가 미승인한 이벤트 대회/행사	KLPGA가 아래의 사유 등으로 회원 참가를 불허하였으나, 위반한 경우 (단, 불허 사유에 대해 공개할 의무는 없음) cf) 불허 사유 사례 1) KLPGA 공인 대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KLPGA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회/행사 개최 일자부터 <u>5년간</u> KLPGA 공인 이벤트 대회/행사 <u>개최 불가</u>

2) KLPGA 회원

구분	징계 사항
참가 선수	위반사항에 대해 KLPGA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근거)
대회/행사의 운영 또는 관여자	위반사항에 대해 주최사 또는 대행사 징계와 별도로, KLPGA 회원으로서 KLPGA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근거)

※ 상벌분과위원회 규정(2021.01.26. 기준) 내 KLPGA 회원 징계사항

구분	규정
벌칙금	가. 에티켓 - 회원이 골프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골프 팬의 빈축을 하거나 혐의 또는 타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심의결과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 골프장 출입 시 청바지(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제외. 단, 찢어지거나 구멍 뚫린 청바지는 제외.), 트레이닝 복, 과도한 노출의 의상, 슬리퍼를 착용한 경우 또는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 라운드 후 <u>만찬 및 시상식 참석 시 라운드에 입은 복장을 탈의한 후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지 않은 경우</u>.(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 골프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나. 프로암 - 협회의 공인을 받은 이벤트성 프로암대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u>불참할 경우</u>(연간 기준으로 1회는 10만원, 2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은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에 초청받아 출전하는 회원이 프로암 대회 <u>Tee-Off 30분전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u>, 지연도착 횟수에 따라 시즌 기준으로 1회는 50만원, 2회는 100만원, 3회는 1개 대회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3회째 지연 도착한 대회가 시즌 마지막 대회일 경우 1개 대회 출장정지는 다음 시즌으로 이월된다. 단,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지연도착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칙금 또는 출장정지가 부과되지 않는다. - 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개최 <u>1주일 이전에 참가를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u>. (연간기준으로 1회는 30만원, 2회는 50만원, 3회는 7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 <u>라운드 시 핸드폰을 사용했을 경우 또는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u>.(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구분	규정
벌칙금	5)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 라운드 시 <u>동반 팀 또는 플레이어가 프로의 무례한 행동, 불친절 등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u> (5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6)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 마지막조의 스코어 카드 접수 기준으로 <u>30분 후에 시상식에 참석한 경우.</u>(연간기준으로 1회 위반시는 벌칙금 20만원, 2회 위반시는 벌칙금 30만원을 부과하며, 3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위반 이후부터 2개 대회의 프로암 대회에 출전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규투어 프로암 대회 만찬 시 행사 시작 1시간 30분 이후에는 참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찬 중이라도 내일의 투어를 위해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사. 기타 1) 연간 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연간 기준으로 경고 2회 시 10만원, 3회 시 2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2)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로 판단 된 경우
출장정지	- ‘KLPGA 공인 이벤트/행사 규정’ 에 근거 하여, <u>가) ~ 나)에 해당하는 대회/행사에 참가하는 경우</u>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10개 대회까지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10만원 ~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u>가) 공인을 받아야 하나, 공인을 받지 않은 대회/행사</u> <u>나) KLPGA가 KLPGA 회원의 참가를 불허하는 비공인 대회/행사</u>
자격정지	가. 에티켓 1) 골프장에서 프로로서의 직분을 이행치 않거나 과음 등 비신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 할 경우
	나. 회원관련 1) 고의로 협회를 비난하거나, 사사로운 파벌을 조장한 경우. 2) 회원을 빙자하여 타인에게 고의로 경제적 손실을 입혀 물의를 야기하거나 협회 및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3) 대회출전 및 해외여행 시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4) 협회의 공식지시나 통제를 고의로 어겼을 경우
	다. 윤리 관련 1)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제명	- 회원의 품위를 심하게 실추시키거나 파렴치한 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여 도저히 프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기타	- 회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대회에서 대회진행을 방해 하거나, KLPGA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회원에게는 경고, 벌칙금, 출장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이 부과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대회장 출입금지, 캐디금지 등이 부과된다.

II. 개최 절차 및 비용

1. 공인 이벤트 대회

가. 진행 절차

절차	내용
공인 대상 여부 확인	1)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가 KLPGA 공인을 받아야 하는 대회인지 확인 요청 - 대회 개요를 KLPGA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 2) KLPGA가 공인 이벤트 대회 자격 허가 시, 공인 이벤트 대회 신청 진행
공인 이벤트 대회 신청	1) 제출대상 : 주최사 혹은 대행사 2) 제출서류 : <u>개최 공문(세부 개요 및 참가자 명단 포함)</u> 3) 제출기한 : 대회 개최 4주전까지 4) 제출방법 : KLPGA에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접수 완료	KLPGA 담당자가 주최사 혹은 대행사에 접수 완료 통보
개최 준비	1) 운영계획서 공유 2) 주최사(대행사) → KLPGA로 개최비용 입금 - 공인료, 총 상금을 본 대회 개최 15일 전까지 KLPGA에 입금 해야 함 3) 협회 경기위원 및 직원 파견 여부 - KLPGA와 주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개최	대회 진행
종료 후	1) 대회 시 특이사항, 결과보고 공유 2) KLPGA → 선수에게 상금 입금 -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선수에게 입금 - 해당 선수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는 KLPGA가 가짐

나. 일정 변동 시 비용 기준

구분	대회 취소 / 일자 변경		내부 행사만 진행 시 (라운드 취소)
	~ 티오프 전	티오프 후 ~	
공인료	주최사에게 100% 환불	미환불	
상금	주최사에게 100% 환불	KLPGA와 주최사가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KLPGA 투어 상금분배 규정 참고)	

다. KLPGA 공인료 기준

구분	내용
공인료 기준	KLPGA와 주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관례 및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함

2. 공인 이벤트 행사(이벤트성 프로암)

가. 진행 절차

절차	내용
공인 대상 여부 확인	1)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가 KLPGA 공인을 받아야 하는 행사인지 확인 요청 - 행사 개요를 KLPGA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 2) KLPGA가 공인 이벤트 행사 자격 허가 시, 공인 이벤트 행사 신청 진행
공인 이벤트 행사 신청	1) 제출대상 : 주최사 혹은 대행사 2) 제출서류 - <u>개최 공문</u> - <u>개최 신청서(*별첨. KLPGA 양식)</u> 3) 제출기한 : 행사 개최 2주전까지 4) 제출방법 : KLPGA에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접수 완료	KLPGA 담당자가 주최사 혹은 대행사에 접수 완료 통보
개최 준비	1) 운영계획서 공유 2) 주최사(대행사) → KLPGA로 개최비용 입금 - 공인료, 선수사례비를 본 행사 개최 3일(영업일) 전까지 KLPGA에 입금 해야 함 3) KLPGA 회원 여행자 보험 가입 - 주최사 혹은 대행사는 섭외가 완료된 선수 전원에 대해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가입완료 후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KLPGA에게 제출) -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선수 주민등록번호를 KLPGA에 요청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달 가능
개최	행사 진행
종료 후	1) 행사 시 특이사항, 결과보고 공유 2) KLPGA → 선수에게 상금 입금 -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선수에게 입금 - 해당 선수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는 KLPGA가 가짐

나. 일정 변동 시 비용 기준

구분	행사 취소 / 일자 변경				내부 행사만 진행 시 (라운드 취소)
	~ 프로암 2일전	~ 티오프 3시간 전	~ 티오프 전	티오프 후 ~	
공인료	주최사에게 100% 환불			미환불	
선수 사례비	주최사에게 100% 환불	주최사에게 50% 환불, 선수에게 50% 지급	선수에게 100% 지급		

다. KLPGA 공인료 기준

1) KLPGA 참가 선수 인원수에 따른 공인료 기준

인원	현행	개정 (2023.01.01.부 적용)
4명 이내	없음	좌동
5명 ~ 8명		2,000,000원
9명 ~ 12명	2,000,000원	3,000,000원
13명 ~ 20명	3,000,000원	4,000,000원
21명 ~ 25명	5,000,000원	좌동
26명 ~ 30명	7,000,000원	
31명 이상	10,000,000원	

2) 공인료 할인 기준

대상	현행	개정 (2023.01.01.부 적용)
대회 타이틀 스폰서	무료 (횟수에 상관없음)	좌동
공식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연 1회 무료, 2회부터 50% 할인	
KLPGA 주관 대회 개최 골프장 ※ 골프장이 이벤트성 프로암 주최사인 경우만 해당	연 1회 무료	
방송사, 신문사	30% 할인	
협찬사(서브스폰서), 잡지사	20% 할인	
KLPGA 회원이 프로암을 주최 또는 운영할 경우 ※ 단, KLPGA 회원이 주최사 또는 운영대행사의 대표 또는 임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50% 할인	좌동
행사의 주최사 소속 선수로만 운영할 경우 ※ 단, 소속선수임을 입증하는 서류 (각종 계약서, 소속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라. KLPGA 회원(선수) 사례비 기준

구분	내용
사례비 기준	1) 사례비 : 1회 1인 최소 80만원 이상 지급 ※ 단, 혼성(여자프로, 남자프로) 프로암 개최 시 KLPGA 회원 사례비는 최소 150만원 이상 지급 2) 개인별 차등지급 불가 3) 본 행사 주최사가 참가 선수와 계약 관계인 경우,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해당선수 사례비 미지급할 수 있음 (계약 조항 제출 必, 공인료 기준의 인원수에는 포함됨) 4) 제주/해외 개최 시 - 사례비 외 항공료, 숙박비 등은 선수와 개별 상의 후 책정 5) 선수가 강의, 사회(MC), 원포인트 클리닉 등 진행 시 - 사례비 외 비용은 선수와 개별 상의 후 책정
선수 섭외 후 인원 축소 시	1) 선수 섭외 완료 후 주최사측 변동사항에 따라 인원이 축소될 경우 가) 행사 일주일 전 ~ 프로암 전날 - 해당 선수에게 사례비의 50% 지급 나) 프로암 당일 - 해당 선수에게 사례비 100% 지급 2) 주최사에서 해당 선수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를 표명해야 함
사례비 지급 방법	1) 사례비 전액은 행사 개최 3일(영업일) 전까지 KLPGA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함 - 현장 지급 불가 - 주최사 / 대행사가 선수에게 지급 불가 - 지정된 1개 업체에서 KLPGA에 전액 입금해야 함(여러 업체에서 분할 입금 불가) 2) 프로암 종료 후 KLPGA는 선수 개별 통장으로 입금
원천징수	1) 해당 선수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무는 KLPGA가 가짐 2) 주최사 혹은 대행사가 원천징수 희망 시, 참가 선수 전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을 KLPGA 담당자(경영지원팀 김민정 과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Ⅲ. 기타

1. ‘각종대회 및 행사 공인 기준’ 규정

장 소	구분		KLPGA 주최/주관	KLPGA 공식기록 인정	상금 유무	해당 대회	비고
국 내	공 인	공식 대회	O	O	O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 등 유사대회	KLPGA 출전자격 리스트 상 시드권 및 시드순위자 60명 이상 참가 (초청 또는 추천인원은 제외) 단, 외국협회와 Co-Saction 또는 Tri-Saction하는 대회의 경우 KLPGA 회원 30명 이상 참가 하여야 공식기록 인정
		비공식 대회	O / X	X	O / X	더컨즈, 정회원선발전 등 유사대회	
		해외투어 대회	O / X	O / X	O		해외투어가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이 벤 트	대회	O / X	X	LF포인트 왕중왕전, 챔피언스 트로피 등 유사대회	
			행사	O / X	X	각종 기업 이벤트 프로암 등 유사행사 (홍보용 캘린더 제작 포함)	KLPGA 회원이 9명 이상 참가할 경우 공인 必 ※ 2023.01.01 부로 9명→5명 으로 변경
	비 공 인	대회	X	X	O / X	스크린 골프 대회, 지역 단위 대회 등 유사대회	KLPGA가 KLPGA 회원 참가를 불허할 수 있음
		행사	X	X	O / X	KLPGA 회원이 8명 이하로 참가하는 이벤트 프로암 등 유사행사	

2. 안내 사항

가. 입금계좌 안내

구분	내용	
은 행 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공인료	259-910009-33604 (KLPGA 세금계산서 발행)
	상금, KLPGA 회원(선수) 사례비	259-910009-35904
예 금 주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주)	
담 당 자	경영지원팀 김민정 차장 (T.02-560-4423 / E. mj.kim@klpga.com)	

나. 문의/담당 안내

담당 부서	담당자	내선 번호	이메일
전략마케팅팀	박진우 팀장	02-560-4430	jino@klpga.com
	최윤희 차장	02-560-4433	iamcyhee@hanmail.net